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군

내 용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울주군은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8개소가 참여하고, 이 중 우수공동체에 대해 [표1]과 같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공동체명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60,000	130,000	104,000	26,000
2015	○○마을	80,000	40,000	32,000	8,000
2016	○○마을	100,000	50,000	40,000	10,000
	○○○○협회(2017년도 이월)	80,000	40,000	32,000	8,000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71호)」 제

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가 시행한 “20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요청” 공문에서 제시한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298호)」(이하 “자율관리어업규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어선 안전 설비·장비 및 친환경어구 구입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투석, 해중립 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 시 보조금을 「자율관리어업규정」에서 허용된 내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은 보조사업자인 ○○○○협회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17.

12. 16.에 제출한 20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2017년 이월) 완료 보고 및 청구서에 [표2]와 같이 「자율관리어업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미끼(냉동 청어)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17. 12. 27.)하는 등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사업비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 도	공동체명	부적정 사업내역	사업비 내역				환수대상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016 (이월)	○○○○협회	미끼(청어)	4,300,430	2,150,220	1,720,170	430,040	3,870,390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시정]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목적 외 내역사업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환수 및 반납조치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